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4.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2월 31일, 김용태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6년 1월 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6. 3. 25.)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6. 4. 2.)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6. 4. 7)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
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김용태의원)

현행법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00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기숙사의 설비 및 주거 환경 등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근로자의 기숙사 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용자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에는 국가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장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20조제1항, 제22조의2제3항·제4항 및 제32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한석현)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준을 위반한 기숙사를 제공한 사용자를 제재하려는 것으로,

최근 대법원이 농장에서 일하며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지내다 사망한 외국인근로자의 유족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고용노동부가 해당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하거나 건강진단을 실시한 적이 전혀 없었고, 계획 수립하지도 않아 「외국인근

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고, 정부 측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면서 “한국 정부가 원고들에게 총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¹⁾ 확정하여, 고용허가제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건강과 주거권을 보호할 책임이 대한민국 정부에 있음을 인정한 점과도 맥락을 같이하고, 2025년도부터 “외국인근로자고용관리”라는 세부사업중²⁾ “외국인근로자고용관리”라는 내역사업으로 내역사업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공공주거시설 건립을 위한 초기 시설 지원 비용을 편성·집행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사업을 법률에 명시했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

다만, 현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업 사용자는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숙사 제공할 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하더라도 실질적인 주거 수요에는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1) 서울고등법원 2024나56742

2) 사업코드 3051-308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생략

6. 찬반토론의 요지

생략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8. 부대의견

없음

9.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10. 기타사항

없음